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2015. 12. 2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배경	1
II. 개인연금의 관리체계 개편	2
1. 현황	2
2. 추진방향	3
3. 주요내용	4
가.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4
나. 상품 접근성 제고를 통한 연금가입 확대	6
다.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연금화 유도	6
라. 종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7
III. 퇴직연금 운용방식 개선	10
1. 현황	10
2. 주요내용	11
IV. 국민연금 운영의 금융산업 연계강화	12
1. 현황	12
2. 주요내용	13
V. 향후 추진계획	14

I.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수명증가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나, 노후준비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

*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 / 14세 이하 인구) 전망('15년→'60년, '15.7월 통계청) : (한) 94.2 → 393.1 (일) 204.7 → 288.3 (미) 75.8 → 123.8 (독) 165.9 → 249.6

○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전망('15년→'60년, '15.7월 통계청) : (한) 17.9 → 80.7 (일) 43.5 → 73.2 (미) 22.3 → 37.6 (독) 32.6 → 61.9

○ 가계저축률*이 낮고, 개인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노후에 필요한 생계자금을 축적하는데 한계

* 가계순저축률(%), '12년, 통계청) : (한) 3.8 (미) 5.8 (불) 11.7 (독) 10.3 (호) 10.5

**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비중(%), '12년, 통계청) : (한) 24.9 (미) 68.5 (일) 59.1 (호) 38.7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적금, 채권 등 보수적인 자산운용만으로는 충분한 수익달성이 곤란

* 은행 정기예금 금리(만기 1년~2년 미만, %) : ('07말) 5.69 → ('11말) 4.07 → ('15.3Q) 1.62

□ 개인·퇴직·국민연금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확보할 필요

○ (개인연금) 종합적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개인·퇴직·국민연금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완성하고 금융산업의 성장기회 확보

○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 및 연금수급률 등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

* 사업장 중 퇴직연금 도입률 : 16.7% / 퇴직자 중 연금수급 비중 : 6.2%('15.3Q)

○ (국민연금) 금융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대표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 강화 및 운영 효율성 도모

II. 개인연금의 관리체계 개편

1 현황

◆ 세제혜택에 따라 세제적격(세액공제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비과세 연금보험)으로 구분

○ 총 적립금은 약 28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15.3Q 기준) (세제적격 : 약 109조원, 세제비적격 : 약 180조원)

① (수익률) '14년 기준 수익률은 연금신탁 3%, 연금보험 4%, 연금펀드 △4.3% 수준*으로 주요 연기금**에 비해 저조

* 10년 평균 수익률(%) : 연금신탁 3.9, 연금보험 4.3, 연금펀드 8.9

** 연기금 수익률('14년 기준, %) : 국민연금 5.3, CPIPE(캐) 16.5, CalPERS(미) 18.4, ABP(네) 14.5

○ 복잡한 규율체제로 인해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고, 원리금 보장 상품(세제적격 중 약 90%) 중심으로 운영

- 금융소비자가 연금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용방법 선택 및 포트폴리오 조정이 어려워 적극적 자산운용을 포기

- 가입자의 비전문성을 보완할 자문기능이 약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상품 및 자산운용 방식이 제공되지 못함

② (가입률) 경제활동인구 중 세제적격 연금에 가입한 비중은 약 17%, 비적격 연금은 약 22%에 불과('13년말 기준)

○ 고령화 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노후대비 자산으로서 개인연금에 대한 인식도 및 전문성이 낮음

* 고령화 관련 지출 전망(국회 예산정책처) : ('12) 77조원[GDP 5.9%] → ('20) 140조원[6.7%]

③ (유지율) 연금저축 중 최소 유지요건(5년)을 충족한 계좌가 67%이며, 10년 이상 유지되는 계좌는 약 57%

○ 개인연금은 전 생애에 걸쳐 자산을 운영하고 연금을 수령하나 이에 특화된 수수료·공시 체계* 등 소비자 보호장치 미흡

* (예) 연금저축펀드(총평가액 base)와 연금저축보험(월납입액 base)의 수수료 및 공시체계가 달라 실제 수익률을 비교·확인하거나 노후대비자금 예측이 곤란

2 추진방향

◆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 안전판 강화

개인연금 활성화 3대 목표

연금 수익률
제고

연금 가입
확대

연금화 유인
제고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없는 사항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일관성 있는 종합 규율체계를 구축

추진과제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 1 퇴직연금·개인연금 간 과세이연
- 2 원리금보장신탁 신규가입 제한
- 3 대표상품 제도, 수익률 공시 등

상품접근성 제고를
통한 가입확대

- 1 독립투자 자문업(IFA) 도입
- 2 연금 신상품 개발 지원
- 3 연금 인프라 강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연금화 유도

- 1 장기 가입자 수수료 경감
- 2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모색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

- 1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 2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
- 3 개인연금계좌 도입

3 주요 내용

가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① 퇴직·개인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 도모

○ (현행)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연금화를 위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일시금 인출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

* ①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인출시 퇴직소득세 과세 ② IRP 내 추가적립금 인출 시 기타소득세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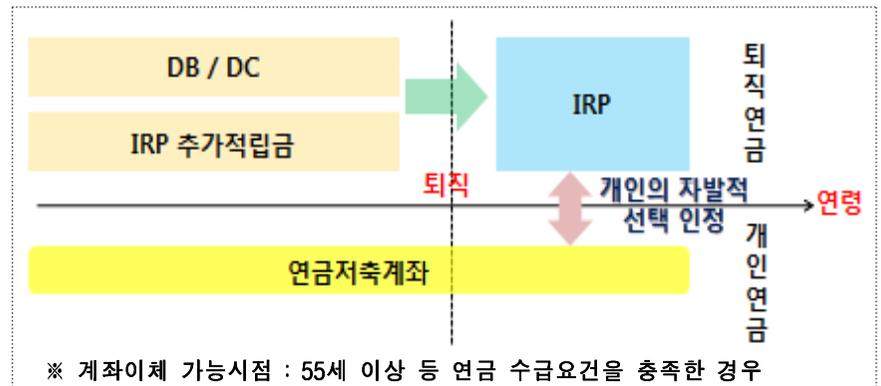
- 개인연금에서 IRP로 연금화를 위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좌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 과세

○ (개선)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개인·
퇴직연금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양자 간 과세이연 인정

* (예) 55세 이상 등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개인연금과 IRP 간 계좌이체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간 과세이연>



② 원리금 보장 신탁*에 대한 신규가입을 제한**하여 원리금 보장 상품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

* 원칙적으로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불가
** 다만, 신뢰보호를 위해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인정

○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하여 운용 다변화 도모

③ 대표 모델포트폴리오 등 대표상품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인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지원

○ (대표 모델포트폴리오) 개인의 경제상황, 투자성향, 연령 등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 및 운용전략이 내재된 대표상품 도입

* (예) 모델 포트폴리오별 구체적 운용전략과 과거 수익률 등을 공시하고 금융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 표준계약 등을 활용(Target date fund 등 라이프사이클 펀드)

○ (자동투자 옵션)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적으로 운용*(Default option)

* 미국, 호주 등에서도 자동투자 옵션 도입으로 연금자산의 합리적 자산배분에 기여

④ 중요사항의 공시 및 정보제공 제도 등을 정비하여 연금사업자간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유도

○ 장기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입자의 실질 수익률, 수수료 등에 대한 비교공시 내용 및 주기(예 : 20년, 30년) 등 정비

○ 가입자가 수익률, 공시이율, 자산운용 현황 등의 중요내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

○ 계좌이전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수익률·서비스 개선 도모

* (예) 사업자간 연계절차 간소화, 계좌이전 신청 시 비대면 실명확인 등

나 상품 접근성 제고를 통한 연금가입 확대

①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등 금융상품 자문업을 활성화하여 연금상품 등에 대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 전속 자문업자와 달리 상품공급업자 또는 상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문, 상품추천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

○ IFA가 전문성·신뢰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

* 英美 등은 불원전판매 문제 해소,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 독립투자자문업 도입

②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상품 개발

* (예) 고령자·비건강인 전용상품, 특정 연령 이상의 연금 추가납입 유도(Catch-up plan) 등

③ 연금포털 기능* 및 무료 금융상담·교육 강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 연금 인프라 내실화

* (예) 모바일을 통한 연금 예상수령액 등 조회, 연계기관 확대 등

④ 개인의 투자성향에 기반한 판매원칙 수립 등 판매관행 개선

다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연금화 유도

① 연금상품의 수수료, 보수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등 마련

* 각 업권별 상이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여 장기운용·수급 등 연금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

② 연금상품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보수 할인 등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 모색

* (예)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 10% 할인, 체감식 수수료(CDSC)를 도입해 기간 경과에 따라 판매 수수료가 낮은 클래스로 자동 변경하는 방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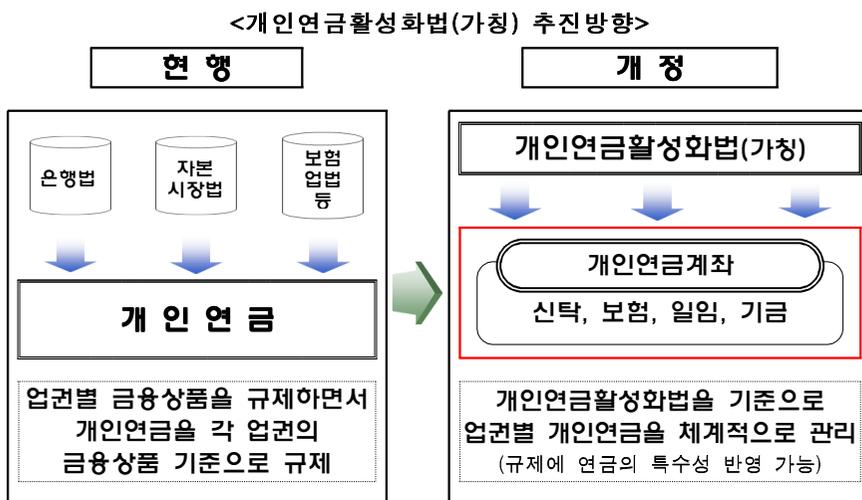
라 종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 추진

1. 「개인연금활성화법」의 제정 필요성

□ 개인연금은 세법 및 각 업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가입·운용·지급·인센티브제공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적 틀이 필요

- ① 연금은 가입·운용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전제된 금융상품으로 안정적 수급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적장치 필요
- ② 개인연금 관련 개별법상 서로 다른 자산운용 규제틀, 개인연금 활성화법에서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자산운용상 효율성 제고
- ③ 금융업권별로 규율되고 있는 수수료 및 공시체계를 일괄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가 연금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비교 선택
- ④ 연금제도 개선 시 여러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가능

⇒ 「개인연금활성화법」(가칭)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2. 주요 내용

① 연금 가입자 보호체계 구축

① 연금상품 특성을 반영하여 가입·축적·운용·수령 전 단계를 포괄하는 별도의 연금 가입자 보호체계 마련

-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연금사업자를 중심으로 등록요건 및 사업자 책임 및 가입자 보호사항* 등을 마련

* (예) 금융소비자의 Needs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구성 및 판매원칙, 적극적인 설명 의무, 지급방식(적립금의 일정액 이상은 연금유지 강제) 등

<연금가입자 보호 관련 반영내용(예)>

- ① 연금사업자에게 해지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 등에 대한 가입자 안내 의무
- ② 가입자의 만기 운용을 유도하도록 노력할 의무
- ③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가입자에게만 해당 운용방법을 권유 가능
- ④ 운용방법 선택에 따른 위험 및 거래의 특성을 명확히 설명

② 장기간 납입·지급하는 상품특성에 맞게 수익률,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통일적인 공시체계를 구축

②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 연금계약에 투자일임, 기금형 등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

- (투자일임형) 투자일임형 계약을 통해 연금가입자가 전문적 투자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투자일임 계약을 통해 모델포트폴리오, 자동투자 옵션을 연계하는 운용방식 적극 활용

- (기금형) 투자자의 성향(적극투자형, 안정형 등)에 따라, 연금자산 운용만을 목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대표기금*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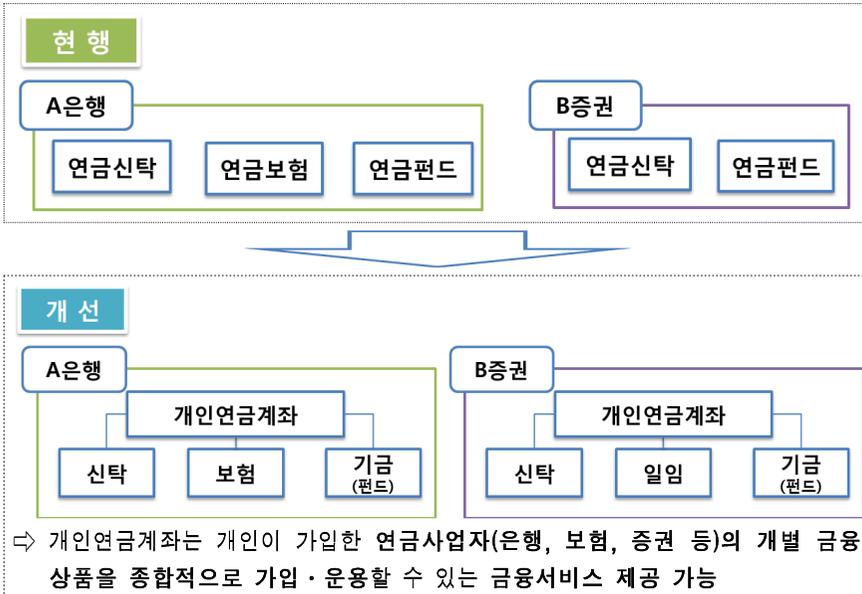
* 연금사업자는 자산운용사가 제시한 대표기금을 포트폴리오에 따라 편입·운용

○ 대표 모델포트폴리오, 자동투자옵션 등의 대표상품 제도 정착

③ 연금자산 관리를 위한 '개인연금계좌' 도입

-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개인연금을 납입·운용·수령하는 기본계좌*
 - * 계약형태 : 신탁(특정금전신탁), 보험, 일임, 기금(집합투자)
- ①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해당 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
 - 동 계좌를 통해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
 - * 미국은 IRA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편입되어 장기 운용될 수 있도록 과세이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축적으로 금융상품을 편입·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②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전 시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양자 간 전환이 용이하도록 유도
- ③ 연금사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을 쉽게 구분하고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도모

<개인연금계좌 운영방안(예시)>



Ⅲ. 퇴직연금 운용방식 개선

1 현황

◆ 전체 사업체의 16.7%*(29.3만개소), 상용근로자의 51.6%(568만명)가 가입하여 제도도입 10년 만에 적립금이 111.2조원으로 확대('15.3Q 기준)

* 다만,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사외 예치 적립금 및 수수료 부담,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도입률이 낮음(300인 이상 사업체 81.2%, 30인 미만 사업체 15.3%)

① (적립금 운용)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을 선호하는 가입자 인식*, 경쟁력 있는 운용상품 부재 등으로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

* 전문성 부족, 포트폴리오 구성의 어려움 등으로 운용지시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경향

○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은 상대적으로 실적배당형 비율이 높으나,

- 확정급여형(DB)은 대부분 원리금보장 운용

* (실적배당형 비중) DB형 2.0%, DC형 19.9%('15.3Q 기준)

② (일시금 수령) 퇴직자 대부분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자산으로서 활용도가 미흡

* '15.3Q중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의 6.2%가 연금으로 수령

○ 다만, 연금 수급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

* 연금수급자 추이(%): ('14.1Q) 2.0 → ('14.3Q) 4.1 → ('15.1Q) 3.1 → ('15.3Q) 6.2

③ (인프라) 퇴직연금 역할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확대 필요성 제기

○ 퇴직연금제도 홍보·컨설팅 강화, 학술연구 및 사업 추진 관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민·관 소통 확대 등

2 주요내용

① **(다양한 운용방식)** 근로자 수급권 강화를 전제로,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운용방식 등을 검토 (TF 구성·운영)

○ 대표 포트폴리오*,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형, 적격 자동투자 옵션** (Default option), 계좌이동 간소화 방안 등 도입

* 가입자 상황에 맞는 운용상품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가입자 운용지시 없는 경우 안정성+수익성이 조화된 상품으로 자동운용

○ 퇴직연금 자산운용 방식 등에 대한 단계적인 합리화

② **(연금화 유도)** 다양한 수령방식 등을 도입하여 연금화 강화

○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의 중도인출 방식 전환(사유 → 한도) 등 IRP 제도 개선, 연금지급 구조 다양화* 추진

* (예) 유족연금, 체감·체증형 연금, 계좌인출방식(은퇴 후 연금지급을 정기적으로 인출하되 잔여적립금도 운용 가능한 방식) 등

③ **(인프라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술연구 및 홍보·교육 등 공동사업 추진

* 고용부, 금융위, 노·경총, 연금학회, 퇴직연금발전협의회, 민간 퇴직연금 연구소 등

<퇴직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 퇴직금 체불방지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 가입부담 완화(부담금·수수료 일부 지원) 등 중소영세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확대 추진 등

⇒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중소기업제도 도입, 퇴직급여 적용확대는 관계 부처 합동대책으로 既발표('14.8월)하여 현재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IV. 국민연금 운영의 금융산업 연계강화

1 현황

□ **(적립금)**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15.6월말 현재 약 496.2조원*으로 일본,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적립금 기준)으로 성장

* (금융부문) 494.7조원, (복지 등 기타부문) 1.5조원

○ 적립금은 '15년 중 500조원을 돌파하여 '20년 847조원, '43년 최대 2,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13년 제3차 재정계산)

□ **(자산운용)**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 금융 시장에서의 거래비중 및 영향력이 점차 확대

○ '15.6월말 기준 국내자산의 투자비중은 77.5%(383.3조원), 해외 자산의 투자비중은 22.5%(111.3조원)

* 부문별 투자규모('15.6월말 기준, 조원) : 국내채권 265.8(53.6%), 해외채권 20.5(4.1%), 국내주식 95.8(19.3%), 해외주식 64.3(13.0%), 국내대체 21.7(4.4%), 해외대체 26.5(5.3%)

○ '15.6월말 기준 국내 금융자산(4,427조원) 대비 8.7%, 국내 주식시가 총액(1,496조원) 대비 6.4%, 채권발행 잔액(1,543조원)의 17.4% 차지

* GDP대비 기금규모(%) : ('88) 0.4 → ('00) 10.2 → ('05) 18.9 → ('14) 32.9

□ **(운용성과)** '14년중 기금 수익률은 5.25%(수익금은 23조 326억원)

* '88년 이래 연평균 수익률은 6.21%, 누적수익금은 212조 4,407억원

⇒ 국민연금의 적립금 증가 등에 따른 금융시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적 고려 필요

2 주요내용

① (투자 다변화) 수익률 개선 등을 위해 해외 등 지속적인 신규 자산군 개발 및 투자 확대

① 국내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해외자산과 대체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자산군을 지속적으로 발굴

* '20년까지 국내채권 비중을 45%대로 축소하고,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35%대로 확대 계획

② 혁신기업·전략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 제고 및 투자위험 분산 등 도모

* 투자성과가 양호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

② (국내 금융사와의 협력)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성장에 맞춰 자금운용시 국내산업 및 금융시장 발전과 연계 확대

① 위탁운용 성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 (예) 위탁운용사에 대한 보수한도 상향 등

② 다양한 위탁운용 유형을 개발하고 위탁운용을 확대함으로써 수익률을 제고하고 운용기관을 내실있게 활용

③ 수익성 등 국민연금의 투자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능력이 우수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참여기회* 확대

* (예) 해외투자 시 국내 위탁운용사 활용 등

④ 국내은행, 보험사 등과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국민연금과 국내 금융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③ (협의채널 마련) 공적연금의 효율적 자산운용과 금융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공적연금,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자율 협의채널* 구성·운영

* 공적연금의 자율성을 전제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금융시장 영향 등의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공조방안 등 논의

V. 향후 추진계획

◆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없는 사항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

□ 법률안 마련 외의 과제별 후속조치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6년초부터 속도감 있게 순차 추진

○ '16.1분기 중 퇴직·개인연금 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 추진

○ '16.2분기 중 「개인연금 모범규준」(가칭)안을 우선 마련하고,

- '16년 중 「개인연금활성화법」(가칭)안을 마련하여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 운용, 지급 등의 전 과정을 종합 규율

<참고 :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논의 경과>

◇ 금융개혁회의 토론안건 상정 : 6.18(목), 7.16(목)

○ 금융개혁자문단 중심으로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 논의

- 자산 운용규제 개선 및 운용 방식 합리화를 통한 지속적 수익률 개선, 연금화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도모

- 장기·안정적 자금인 연기금이 핵심 기관투자자로서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과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 정책 세미나 개최 : 8.21(금)

○ 금융연·자본연·보험연 주관으로 자문단이 마련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연금화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

◇ 관계부처 협의 : 금융개혁 추진단 개최(8.25), 경제장관회의(10.27) 등

○ 금융개혁회의 및 정책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 실시

◇ 금융개혁회의 심의(12.10(목)) 및 '16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12.16(수))

참고	연금 활성화 관련 과제별 조치사항
-----------	---------------------------

구분	추진주체	조치사항	시행시기	
I. 개인연금의 관리체계 개편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① 개인·퇴직연금의 통합 운영을 위한 과제이연 인정	기재부 금융위	소득세법 시행령(\$40의4)	'16.1Q
	② 실적상품 활성화 - 원리금 보장 신탁 축소 유도	금융위	금투업감독규정 (\$4-82)	'16.1Q
	③ 대표상품 제도 활성화	금융위	개인연금 모범규준안 마련	'16.2Q
	④ 연금상품의 통일적 정보제공 기준 모색 - 수익률, 수수료 등 주요사항	금융위	개인연금 모범규준안 마련	'16.2Q
	⑤ 계좌이전 제도 개선	금융위	금융권역별 관련 시스템 구축	'16.3Q ~
상품 접근성 제고를 통한 연금가입 확대	①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
	②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 고령자·비건강인 등	금융위	상품약관 개정	'16.2Q ~
	③ 연금 인프라 내실화 - 연금포털 기능 강화, 무료 재무 상담·교육, 실태조사 실시 등	금융위	시스템 개선 등	'16.1Q ~
	④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절차 개선	금융위	표준 투자권유준칙 개정 등	'16.2Q
연금화 유도	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마련	금융위	개인연금 모범규준안 마련	'16.2Q
	② 장기가입자 인센티브 마련	금융위	개인연금 모범규준안 마련	'16.2Q
종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① 연금가입자 보호체계 구축 ② 연금자산의 운용 효율화 ③ 개인연금계좌 도입	금융위	개인연금활성화법안 마련	'16.~

구분	추진주체	조치사항	시행시기
II. 퇴직연금 운용방식 개선			
① 운용방식의 다양화 - 대표 포트폴리오, default option 등	고용부 금융위	TF 구성 및 근퇴법령 등 검토	'16.上~
② 다양한 수령방식을 통한 연금화 강화 - 중도인출 방식 전환, 연금지급 구조 다양화 등	고용부 금융위	TF 구성 및 근퇴법령 등 검토	'16.上~
③ 인프라 구축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하고 학술연구·홍보·교육 등 공동사업 추진	고용부 금융위	협력 체계 구축	'16.上~
III. 국민연금 운영의 금융산업 연계 강화			
① 혁신기업·전략기업 투자 등 신규자산 발굴 및 투자다변화	복지부	벤처펀드 투자확대 등	'16.~
② 인센티브 제공 등 위탁운용 내실화	복지부	보수한도상향, 신규위탁유형 개발 등	'15.10~, 지속추진
③ 국내 금융기관 참여기회 확대	복지부	해외투자시 국내 위탁운용사 활용 등	지속추진
④ 공적연금과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자율 협의채널 마련	복지부, 금융위	협의채널 구성·운영	'16.上~